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47

2025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26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5.29

4.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2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 6.26)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¹⁾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 의안번호 제2843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제안설명으로,
- 14개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회수액을 2025회계연도 예치금으로 증감 반영하는 등 재무활동을 3,855억원 증액 하였으며
- 도시재생기금, 공공시설등설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정책사업비를 1,663억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함

1) 일괄 제안설명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차이가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4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액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예정인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으로 인한 변경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 계	294,420	377,488	83,068	합 계		294,420	377,488	83,068
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64,750	164,750	-	사 업 비	기금 융자금	200,000	200,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3,790	3,790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86,200	86,900	700
예 치 금 회 수	85,880	158,248	72,368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1	301	-
기타(일반)회계 전 입 금	40,000	50,700	10,700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200	1,200	-
				재 무 활 동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0	10,000	1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2,420	2,420	-
					예치금	4,294	76,662	72,368
				기본경비		5	5	-

[2025년 융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초(A)	변경(B)	증감(B-A) (증감률)	비 고
합 계	294,420	377,488	83,068	
중소기업 금융지원	287,701	288,401	700 (0.24%)	
중소기업 직접융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86,200	86,900	700	·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1	301	-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200	1,200	-	
행정운영경비	5	5	-	
기본경비(기금)	5	5	-	
재무활동	6,714	89,082	82,368 (1226.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	2,420	12,420	10,000	
예수금원금상환	-	10,000	10,000	·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예수금이자상환	2,420	2,420	-	
예치금	4,294	76,662	72,368	· 202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반영

3. 검토의견²⁾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 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증가(723억 6,800만원)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한 기타(일반)회계전입금(107억원)을 증액하고자 수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 지출계획 ①**재무활동**도 예치금(723억 6,8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원을 증액하고, ②**중소기업 금융지원**중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7억원)을 증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³⁾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출계획의 경우, 정책사업인 ①**재무활동(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은 당초 지출계획(67억 1,400만원)보다 1,226.8%, 823억 6,800만원⁴⁾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아울러 다른 정책사업인 ②**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경우, 수출기업중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7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지출계획(2,877억 1,000만원)보다 0.2%, 7억원 증가되는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 ■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4) 예치금 723억 6,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원

의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3-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당 초 (A)	기 운 계 변 경 안 (B)	증 감 (C = B - A)	증 감 률 (D = C / A)
지 출 합 계		294,420	377,488	83,068	28.2
중 소 기 업 금 융 지 원		287,701	288,401	700	0.2
중 소 기 업 금 융 지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87,701	288,401	700	0.2
중 소 기 업 직 접 융 자		200,000	200,000	-	-
시중은행합작자금자원 이차보전금		86,200	86,900	700	0.8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1	301	-	-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200	1,200	-	-
재 무 활 동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6,714	89,082	82,368	1226.8
내 부 거 래 지 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420	12,420	1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 금 상 환		-	10,000	10,000	순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 리 금 상 환		2,420	2,420	-	-
보 전 지 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4,294	76,662	72,368	1685.3
예 치 금		4,294	76,662	72,368	1685.3
행 정 운 영 경 비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5	5	-	-

※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

자료근거 : ①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지출계획

②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25. 5.26) 재구성

-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 변경한 내역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⁵⁾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⁶⁾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때 기금지출 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사업별 설명서를 누락한다면 사업에 대한 신설, 변경 등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의결을 요청하는 행태인 것은 물론 지출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용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용자
2. 금융기관의 저금리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5.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변경된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가. 소위원회

○ 위원구성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11명)

- 위 원 장 : 최민규(도시안전건설)

- 부위원장 : 김경훈(교육), 정준호(교통)

- 위 원 : 서호연(행정자치), 홍국표(기획경제)

이용균(환경수자원), 아이수루(문화체육관광)

도문열(보건복지), 봉양순(도시안전건설)

김종길(주택공간), 김원태(도시계획균형)

※ '25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

나.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5. 6.26(목) 12:00~13: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VI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5. 6.26)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847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4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액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예정인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으로 인한 변경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계	294,420	377,488	83,068	합계	294,420	377,488	83,068
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64,750	164,750	-	사업비	기금 융자금	200,000	200,000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금	86,200	86,900	700
공공예금 이자수입	3,790	3,790	-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1	301	-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200	1,200	-
예치금 회수	85,880	158,248	72,368	재무활동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0	1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2,420	2,420	-
기타(일반)회계 전입금	40,000	50,700	10,700	예치금	4,294	76,662	72,368
				기본경비	5	5	-

[2025년 융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초(A)	변경(B)	증감(B-A) (증감률)	비 고
합 계	294,420	377,488	83,068	
중소기업 금융지원	287,701	288,401	700 (0.24%)	
중소기업 직접융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86,200	86,900	700	·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1	301	-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200	1,200	-	
행정운영경비	5	5	-	
기본경비(기금)	5	5	-	
재무활동	6,714	89,082	82,368 (1226.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	2,420	12,420	10,000	
예수금원리금상환	-	10,000	10,000	·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예수금이자상환	2,420	2,420	-	
예치금	4,294	76,662	72,368	· 202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10,700백만원 중)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 10,000백만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 : 700백만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김효진 (☎ 2133-5190)